

計劃・設計, 施工, 維持・管理에 대한 法・制度의 改善에 關한 研究

- 造景을 中心으로 -

鄭夏光

瑞韓産業技術研究所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Landscape Desig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Jung, Ha-Kwang

Seohan Research Institute For Industry and Technolog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laws for landscape planning & desig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 a section of landscape planning and design, it is needed to intensify the preliminary inspection for the landscape planning and design.
2. In a section of landscape construction, it is needed to intensify the superintendence and the penal regulation for the landscape construction.
3. In a section of landscape management, it is needed to provide the obligatory regulations and to intensify the penal regulation for the landscape management.

I. 序論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고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

률로써 하며(헌법 제23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지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하도록(헌법 제37조) 하였다. 그리

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헌법 제122조) 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 재산권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주민 혹은 시민의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며,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조경에 특히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최근 95년 6월까지 건축관련 법률의 개정을 보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95.2.23), 주차장법 시행령(95.2.18), 건설업법 시행규칙(95.2.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95.2.11), 건축법(95.1.5), 및 동 시행령(92.5.30)과 동 시행규칙(92.6.1), 건축사법(95.1.5), 건설기술관리법(95.1.5),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94.12.30),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94.8.16), 도시계획법(91.12.14) 및 동 시행령(92.12.31)과 동 시행규칙(92.12.23) 등이 개정되었는데 이 중 건축법은 1996년 1월 5일, 건축사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법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이 조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다. 법·제도적인 변경에 있어서 법률(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조경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일임됨으로써 법의 성격이 약해지고, 조례의 이행과정에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권오준, 1993), 자치구 조례개정과 기구개편에 따른 조경부서의 축소화 등은 조경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김승환, 1993), 조경공간 조성을 위한 관련법 조항들은 개괄적인 사항으로 명문화되고 실지 필요한 기준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될 여지가 많다(김은성, 1993).

오늘날 도시화와 산업화가 자연경관과 도시경관의 질을 더욱 악화시킴으로 인해 생활환경의 질이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생활환경의 악화에 대처하려면 종래와 같은 구속력이 없고 분산된 조경관련 법체계 그리고 미온적인 경관·조경행정으로는 불충분하거나 부적합하기 때문에 조경 및 경관보호를 위해서는 종합적 대책수립·집행과 같은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법·제도의 조경관련 규정과 규제상태를 파악하여 현행 조경관련 법·제도의 문제점들을 밝혀내어 조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법·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研究方法

1. 分析對象

분석대상의 법규는 법제처(1995)에서 정한 법규분류에 준하여 법률, 대통령령, 부령, 규칙, 그리고 조례 중에서 본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① 국토개발과 관련된 법규(12법,

〈表 1〉 分析對象 法律

群 別	細 分 類
國 土 開 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동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동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주도개발 특별법, 동 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동 시행령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 동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권 등록령, 동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공원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

<表 1> 계속

群 別	細 分 類	
都 市	都市計劃	· 도시계획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지하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법률
	都市計劃施設	· 수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상수원관리규칙 · 농업용수공급규칙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 수도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 음용수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 · 하수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주차장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도시공원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都市開發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도시재개발법, 동 시행령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동 시행령 · 도시재개발등기 처리규칙
住 宅・建 築・道 路	住宅・建設	· 주택건설촉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국민주택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공동주택 관리령, 동 관리규칙 · 임대주택건설촉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택지개발촉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대한주택공사법, 동 시행령 · 주택건설 공사감독업무 등에 관한 규칙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건설기술관리법
	建築	· 건축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표준설계도서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 건축물 착공통계조사 시행규칙
	道路	· 도로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 도로유지·보수령 · 도로표지규칙 · 도로정비촉진법 · 한국도로공사법, 동 시행령 · 고속국도법, 동 시행령 · 고속국도 노선지정령 · 유료도로법
自治團體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2개 자치구 건축조례 · 대구직할시 건축조례	

11령, 6규칙), ② 도시와 관련된 법규(9법, 8령, 14규칙), ③ 주택·건축·도로와 관련된 법규(13법, 14령, 21규칙), ④ 자치단체와 관련된 건축조례(2개 조례, 22개 서울시 자치구 조례)로 제한하였다. 분석대상의 세부법률은 <표 1>과 같으며, 이러한 법률에서 조경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법규만을 세부적인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대상법규의 분석기간은 1995년 6월 이전으로 한정하였다.

2. 分析內容

중점적인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내용에 관한 것과 규제방법에 관한 것이다.

첫째, ① 도시계획상 도시계획구역, 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② 단지계획상 단지별 및 단지시설, ③ 대지계획상 대지와 건축물별 부속시설, ④ 국토계획상 지역별, ⑤ 그의 제도상에서의 조경규정을 중심으로 하는 규정내용에 관한 사항이다.

둘째, ① 계획·설계에서 이루어지는 (입지·설계)심의, 승인, 신고, 조치, 허가, (조경)설계, 권장 등, ② 시공에서 이루어지는 (착공)신고, (시공)감리, (중간·사용)검사 등, ③ 유지·관리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보고, 신고, (하자)보수 등 ④ 그의 벌칙으로 벌금과 (원상)회복 등과 같은 규제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3. 分析方法

분석방법은 <표 2>의 건축절차 및 담당업무와 (도 1)의 건축계획·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의 절차, 즉 건축의 전체적인 과정의 흐름에 기초하였다.

먼저 조경규정이 마련된 법률을 선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앞의 분석내용 중 규정내용을 종렬에 배치하고 규제방법을 횡렬에 배치하여 규정내용과 규제방법들의 상호관련성을 모색하였으며, 조경관련 규정내용과 규제방법의 규제정도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정

내용이 미흡하거나 혹은 규제정도가 약한 이유를 찾아내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表 2〉 建築節次와 擔當業務

建築主	建築士	行政機關	行 爲
건축기획 및 건축계획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발급
심의신청	-	·토지형질변경심의 ·입지심의	-
건축계획의 사전결정신청	대행	관계기관 협의·동의	건축종합민원실 운영
건축심의신청	대행	건축심의	건축위원회 구성
건축허가신청	조사·검사	건축허가(승인·협의·동의)	·건축허가서교부 ·면허세, 수수료, 주택채권, 도로점용료 등 납부
착공신고	대행	착공신고수리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선정확인
중간검사신청	현장 조사·확인	중간검사(중간검사필증교부)	-
민원유발	감리책임문제	민원처리	민원조정심의위원회(특수한 경우)
사용검사신청	현장 조사·확인	사용검사(필증교부)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취득세, 등록세 등
등기신청	-	-	등기
건축유지·관리	현장 조사·보고	-	건축물관리상태 보고

건축사	계획·설계
시장·군수	건축계획심의
건축주	건축허가신청
관계기관	승인·동의·협의
시장·군수	건축허가
시장·군수	건축허가서교부
건축주	착공
건축주	착공신고
건축주	중간검사신청
시장·군수	필증교부
시장·군수	필증교부
건축주	사용검사신청
시장·군수	사용검사
건축사	조사·검사조서
시장·군수	사용검사필증교부
건축주	건축물의사용
건축주	유지·관리

(圖 1) 建築計劃·設計에서 施工 및 維持·管理까지의 節次

Ⅲ. 用語設定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① 計劃·設計 : 조경기술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경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도면, 구조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설명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施工 : 시공자가 자기책임하에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모든 사항을 충실히 적용하면서 조경시설등에 대한 조경공사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維持·管理 : 조경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조경시설을 항상 법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罰則 : 어떤 행위를 명하고 제한하며 또는 금지하고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을 과하는 규정이다.

Ⅳ. 造景關聯法·制度의 現況分析

1. 造景關聯法規

분석대상이 되는 조경관련 법률 중 조경계획·설계,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법·제도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법규를 열거하면 <표 3>과 같다.

건축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규칙, 도시계획법과 동 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촉진법과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자연공원법 시행령,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서울시 22개 자치구 건축조례,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등이다.

<表 3> 造景關聯 法規

群 別	關 聯 法 規
國土 開發	國土計劃 ·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自然公園 · 자연공원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都市	都市計劃 · 도시계획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都市計劃施設 · 도시공원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住宅 建築 道路	住宅·建設 · 주택건설촉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공동주택 관리령, 동 관리규칙 · 건설기술관리법
	建築 · 건축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자치 단체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2개 자치구 건축조례 ·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2. 都市計劃

1) 都市計劃區域

도시계획구역에서 조경관련 규정은 <표 4>와 같으며,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의3) 그리고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이행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혹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의4)

2) 地域·地區·區域

① 地域

지역지정상 조경관련 규정은 <표 5>와 같으며,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역내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30% 이상을 조경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심의를 거쳐 완화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20% 이상을 조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서는 대지면적¹⁾이 500m² 이하인 건축물은 심의를 거쳐 일부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건축조례 제17조)

② 地區

지구지정상 조경관련 규정은 <표 6>와 같으며, 풍치지구에 있어서는 당해 대지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경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건축물의 수직증축은 예외로 하였다(서울시 자치구 건축조례 제24조). 도시

<表 4> 都市計劃區域에서의 造景關聯 規定

	計 劃 設 計						施 工			維 持 管 理		罰 則		備 考		
	審 議	承 認	勸 獎	申 告	措 置	許 可	設 計	申 告	監 理	檢 查	報 告	申 告	補 修		罰 金	回 復
都 市 計 劃 區 域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 이행을 담보 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					0										· 도시계획법 제4조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의4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0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의3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								0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의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													0		
허가의 내용대로 위해방지등의 조치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위해방지등의 조치					0											

1)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 연면적

〈表 5〉 地域에서의 造景關聯 規定

		計劃設計						施工			維持管理		罰則		備 考		
		審議	承認	勸獎	申告	措置	許可	設計	申告	監理	檢査	報告	申告	補修		罰金	回復
綠地地域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 이상					0											서울시 자치구 건축조례 제 17조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은 대지 안의 수립 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지면적의 20% 이상	0															
商業地域	조경면적의 산정기준은 일부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m ² 이하인 건축물	0															

설계지구에 있어서는 대상구역과 주변지역의 조경계획에 대해 승인과 심의를 얻도록 규정(건축법 시행령 제10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와 제37조)하고 있으며 그리고 공공조경에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설계 작성자가 이를 변경하도록 규정(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가구정비지구에 있어서는 조경계획과 조경비용의 추정액 등의 서류 및 도면은 승인을 얻도록 규정(건축법 시행령 제112조)하고 있다.

③ 區域

시가화조정구역에 있어서 조경관련 규정은 〈표 7〉과 같으며, 구역의 허가조건으로 조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5)하고 있다.

3) 都市計劃施設

도시계획시설중 조경관련 규정은 〈표 8〉과 같으며, 도서관, 공동묘지, 그리고 장례식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이용자를 위하여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건축물²⁾, 시장, 주차장³⁾ 등의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심의를 거쳐 일부 완화하거나 혹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서울시 자치구 건축조례 제17조)하고 있다.

도시공원에 속하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은 모두 그 공원의 이용자를 위하여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하고 있다. 그리고 녹지 중에서는 경관녹

〈表 7〉 區域에서의 造景關聯 規定

		計劃設計						施工			維持管理		罰則		備 考		
		審議	承認	勸獎	申告	措置	許可	設計	申告	監理	檢査	報告	申告	補修		罰金	回復
市街化調整區域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조경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음					0	0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4항

2) 구로구 제외
3) 마포구, 서초구, 동대문구, 용산구, 양천구, 서대문구만 해당
증구 :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전용주차장

<表 6> 地區에서의 造景關聯 規定

		計劃設計					施工			維持管理		罰則		備考			
		審議	承認	勸獎	申告	措置	許可	設計	申告	監理	檢査	報告	申告		補修	罰金	回復
風致地區	당해 대지 안에 대지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				0												서울시 자치구 건축조례 제24조
都市設計地區	도시설계에 다음 사항이 표시된 서류 및 도면을 제출 7. 대상구역 및 주변지역의 조경계획		0														건축법 시행령 제105조
	도시설계승인 신청도서 작성기준 4. 조경 및 경관계획 가. 공공공지 공개공간의 계획 나. 공원 녹지의 연계계획 다.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계획 라. 조경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가로변 식재계획		0	0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1) (제2조 제1항 관련)
	도시설계 작성도서 6. 건축규제계획: · 공공조경 9. 조경계획: · 조경기본계획 · 식재계획 · 조경시설물설치계획 · 공공조경계획			0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11) (제37조 제2항 관련)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설계 작성자가 이를 변경 · 구분: 공공조경 · 작성자: 서울특별시, 직할시장 및 도지사 외의 자 · 변경내용: 수종, 시설물의 종류 변경			0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12) (제38조 관련)
特定街區整備地區	건축계획은 다음 서류 도면을 작성 3. 특정가구정비지구의 대지조성 및 조경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0													건축법 시행령 제112조
	건축계획에는 다음 서류 도면을 첨부 4. 건축계획에 의한 대지의 조성 및 조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액을 표시한 서류			0													

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9조)하고 있다.

3. 團地計劃

1) 住宅團地

주택단지에 있어서 조경관련 규정은 <표 9>와 같으며, 주택단지 사업계획 승인시 조경도

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축척, 식수평면계획, 식수면적, 수종, 수형, 규격, 휴게시설, 기타 조경시설물의 배치상황 등이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별표2])

2) 住宅團地施設

① 住宅

공동주택의 경우 조경관련 규정은 <표 10>과 같으며,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

〈表 8〉 都市計劃施設에서의 造景關聯 規定

		計劃設計						施工			維持管理			罰則		備 考		
		審議	承認	勸獎	申告	措置	許可	設計	申告	監理	檢査	報告	申告	補修	罰金		回復	
學校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건축물의 경우에는 조경시설기준의 1/2 범위 내에서 완화	0																서울시 자치구 건축조례 제 17조
市場	조경면적의 산정기준은 이를 일부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1.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0																
駐車場	조경면적의 산정기준은 이를 일부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4.자동차관련 시설중 주차장	0																
圖書館	도심부에 설치하는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조정등 부대시설을 확보					0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5호
共同墓地	묘지이용자의 호적한 성묘분위구조성을 위하여 묘역 내 및 그 주변지역은 녹화 또는 조경시설을 하고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					0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제4호
葬禮式場	주위의 다른 건축물등과 차단되도록 시설의 외곽지역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결정					0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의3 제2호
어린이公園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등					0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近隣公園	근린생활권근린공원 도보권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휴양, 오락활동등에 적합한 조경시설 등					0												
	도시계획구역근린공원 광역권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주말의 옥외휴양, 오락활동에 적합한 조경시설 등 전체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						0											
都市自然公園	공원시설은 주로 양호한 자연조건과 역사적 의의가 있는 장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경시설 등					0												
墓地公園	공원시설은 주로 묘지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 등					0												
體育公園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등					0												
景觀綠地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당해 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이내					0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택의 경우 조경기사(1급 이상)가 설계 및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⁴⁾(서울시 자치구 건축조례 제14, 17, 18, 19조)하였다. 그리고 단

지면적의 30%의 면적에 녹지를 확보하여 조경등의 조치 및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상복합건축물과 상업지역 안의 주

<表 9> 住宅團地에서의 造景關聯 規定

	計劃 設計	施工					維持 管理		罰 則		備 考					
		審 議	承 認	勸 獎	申 告	措 置	許 可	設 計	申 告	監 理		檢 查	報 告	申 告	補 修	罰 金
住宅團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경우 제출 도서 도서의 종류 : 조경도 축척 : 1/50 - 1/1,200 표시하여야 할 사항 : 1. 축척 2. 식수평면계획, 식수면적 3. 수종, 수형, 수목의 규제 4. 휴게시설 5. 기타 조경시설물의 배치			0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택 그리고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3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하였다. 공동주택 외벽에서 2m 띄운 부분은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하였으며, 3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그리고 지하구조물 위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토층을 0.9m이상으로 조성하는 것을 허가조건으로 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하였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조경의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은 하자보수에 있어서 조경공사의 구분과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규정(공동주택 관리규칙 [별표3])하고 있으며,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경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규정(공동주택 관리규칙 제4조의2)하였다.

② 福利施設

복리시설중 생활편의시설의 경우 조경관련

규정은 <표 11>과 같으며, 시설의 면적이 1,000m² 이상인 경우 주차 또는 물품하역 등에 필요한 공터의 주변에 조경을 하도록 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하였다.

4. 垡地計劃

1) 垡地

대지에 있어서 조경관련 규정은 <표 12>와 같으며, 일반적으로 200m²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건축법 제32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서울시 자치구 건축조례 제17조)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건축법 제80조)하고 있다. 그리고 부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경비용을 예탁하도록 규정(건축법 시행령 제27조)하고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조경공사를 완료하도록 규정(서울시 자치구 건축조례 제19조)하고 있다.

4) 조경시설의 설계 감리등을 할 수 있는 조경기사의 공사범위

- 노원, 동작, (제19조) 영등포구(제18조) : 200세대
- 송파, 도봉, 용산, (제17조) 마포, (제19조) 양천, 강서구(제18조) : 100세대
- 서초구(제19조) : 500세대
- 성북구, (제14조) 강남구, 구로구(제17조) : 300세대
- 종로, 중구, 성동, 동대문, 중랑, 은평, 서대문, 관악, 강동구(9개 구) : 조경기사를 정하지 않는 자치구

〈表 10〉 共同住宅에서의 造景關聯 規定

		計劃設計					施工			維持管理			罰則		備 考		
		審議	承認	勸獎	申告	措置	許可	設計	申告	監理	檢査	報告	申告	補修		罰金	回復
共同住宅	건축물에 부수하여 설치되는 조경시설의 설계 및 감리는 조경기사(1급 이상) 2.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0		0								서울시 자치구 건축조례 제 14, 17, 18, 19조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까지의 거리는 2m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					0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단지면적의 3/10에 해당하는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					0	0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녹지에는 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을 설치 2. 각 휴게소에는 파고라 및 5인용 긴의자 5개 이상을 설치하고, 주변에는 교목을 식재할 것						0										
	지하구조물 위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m 이상의 토층을 조성						0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2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 완화 1.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0					
	하자보수 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 책임기간. · 구분 :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2년(주요시설) 나. 잔디심기공사: 1년 다. 조경시설물공사: 1년												0				공동주택관리규칙 (별표 3)

〈表 11〉 福利施設에서의 造景關聯 規定

		計劃設計					施工			維持管理			罰則		備 考		
		審議	承認	勸獎	申告	措置	許可	設計	申告	監理	檢査	報告	申告	補修		罰金	回復
生活便益施設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생활편의시설의 면적이 1,000m ² 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 등에 필요한 공터 주변에는 소음 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					0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그리고 교목(0.2본⁵⁾이상. 다만 흉고직경 12cm, 수고 4m 이상인 경우에는 0.1본 이상⁶⁾ 및 관목(1본 이상)의 식재밀도와 식재비율(수고 2m 이상의 교목을 50% 이상 식재⁷⁾, 상록수는 30% 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가로경관 및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식재기준 이외의 식재수종, 수량 및 방법등에 대해서는 제한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경을 위한 식수 등을 띠모양으로 하는 경우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식수 부적격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어려운 대지에 있어서는 심의를 거쳐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고 5m이상, 수관폭 3m이상의 교

목은 줄지어 심도록 규정⁸⁾하고 있다(서울시 자치구 건축조례 제18조).

2) 建築物

건축물에 있어서 조경관련 규정은 <표 13>과 같으며, 건축허가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은 배치도에 임의의 축척으로 조경계획을 허가사항으로 규정(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조 그리고 [별표 2])하고 있으나, 조경기사가 설계 및 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 5,000m² 이상의 건축물로 제한하여 규정⁹⁾(서울시 자치구 건축조례 제14, 17, 18, 19조)하고 있다.

<表 13> 建築物에서의 造景關聯 規定

	計劃設計							施工			維持管理		罰則		備 考	
	審議	承認	勸獎	申告	措置	許可	設計	申告	監理	檢査	報告	申告	補修	罰金		回復
建築物							0									서울시 자치구 건축조례 제 14, 17, 18, 19조
							0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제4조 및 제6조 제1항 관련)
農 業 施 設						0										서울시 자치구 건축조례 제 17조
工 場						0										
畜 舍						0										서울시 자치구 건축조례 제 18조

- 5) 서초구 : 0.3본 이상, 강서구 : 단서 조항 없음
- 6) 송파구, 은평구, 도봉구 : 다만 가슴높이 두께 12cm 수고 4m 이상인 경우에는 0.1본 이상
서초구 : 다만 흉고 12cm, 수고 5m 이상인 경우에는 0.1본 이상
- 7) 마포구, 종로구, 노원구, 성북구 : 교목을 50% 이상 식재
- 8) 강서구만 해당, 기타 서울시 자치구는 해당 없음.
- 9) 조경시설의 설계감리등을 할 수 있는 조경기사의 공사범위
 - 노원, 동작, (제19조) 영등포구(제18조), 강남구, 구로구(제17조) : 연면적 10,000m²
 - 송파, 도봉, 용산, (제17조) 마포, (제19조) 양천, 강서구(제18조), 성북구, (제14조) : 연면적 5,000m²
 - 서초구(제19조) : 연면적 6,600m²
 - 종로, 중구, 성동, 동대문, 중랑, 은평, 서대문, 관악, 강동구(9개 구) : 조경기사를 정하지 않는 자치구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에 따른 조경관련 규제는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창고 그리고 면적 5,000m²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¹⁰⁾은 심의를 거쳐 일부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서울시 자치구 건축조례 제17조)하고 있으며, 동물관련시설 중 축사에 대해서는 잔디를 깔게 하거나 조경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¹¹⁾(서울시 자치구 건축조례 제18조)하고 있다.

3) 公開空地

공개공지에 있어서 조경관련 규정은 <표 14>와 같으며, 심의를 거쳐 조경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건축법 시행령 제113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2조)하고

있다.

4) 屋上造景

옥상에 조경을 하는 경우 조경관련 규정은 <표 15>와 같으며, 건축물 외곽선 주변에 열식금지와 균식을 통해 휴게¹²⁾장소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심깊이를 1m 이상으로 하며, 단면도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규정(서울시 자치구 건축조례 제18조)하고 있다.

5) 美術裝飾品

미술장식품에 대한 조경관련 규정은 <표 16>과 같으며,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7,000m² 이상인 건축물(서울특별시의 경우

<表 14> 公開空地에서의 造景關聯 規定

		計劃設計						施工			維持管理			罰則		備考	
		審議	承認	勸獎	申告	措置	許可	設計	申告	監理	檢査	報告	申告	補修	罰金		回復
公開空地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0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2조
	공개공지 면적산정은 옥내의 공개공지 면적은 1/2만을 산정하고 기준조경면적은 산정하지 아니함	0															서울시 건축조례 제34조

<表 15> 屋上造景에서의 造景關聯 規定

		計劃設計						施工			維持管理			罰則		備考	
		審議	承認	勸獎	申告	措置	許可	設計	申告	監理	檢査	報告	申告	補修	罰金		回復
屋上造景	건축물 외곽선 주변에 수목을 줄지어 심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물 외곽선의 안쪽에 집단적으로 심어 그 부분이 휴게장소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함					0											서울시 자치구 건축조례 제18조
	수목을 식재하는 때에는 토심깊이를 1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미리 그 부분의 단면도를 제출	0															

10) 서대문구만 해당

11) 강서구만 해당, 기타 서울시 자치구는 해당 없음.

12) 서초구 : 그 부분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여 휴게장소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에는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축물¹³⁾ 또는 연면적 10,000m² 이상인 건축물) 중 건축조례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서울시 자치구 건축조례 제20조 제1항) 그리고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경우에는

착공신고 전¹⁴⁾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할 때에는 측벽에 미술장식품 대신 벽화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¹⁵⁾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건축조례 제20조)

〈表 16〉美術裝飾品에서의 造景關聯 規定

	計劃設計							施工			維持管理		罰則		備 考	
	審議	承認	勸獎	申告	措置	許可	設計	申告	監理	檢査	報告	申告	補修	罰金		回復
美術裝飾品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7,000m ² 이상인 건축물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회화 조각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11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0m ² 이상인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 총공사비의 5/1,00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회화, 조각, 조형시설물 등의 미술장식품을 당해 대지 또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															서울시 자치구 건축조례 제20조
	착공신고 전에 미관조성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것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측벽에 자치구를 상징하는 구조, 벽화등을 설치															

〈表 17〉國土計劃에서의 造景關聯 規定

	計劃設計							施工			維持管理		罰則		備 考	
	審議	承認	勸獎	申告	措置	許可	設計	申告	監理	檢査	報告	申告	補修	罰金		回復
自然公園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 4. 설계도면(평면도, 위치도, 투시도, 조경계획도, 공사비계산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5조
特定地域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 8. 대상구역 및 주변지역의 조경계획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1조

13)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서대문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 9개 구는 해당 없음(층수와 무관함)
 14) 종로구,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관악구, 강남구 : 8개 구만 해당.
 15) 노원구만 해당.

중 조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서울시 및 대구시 건축조례 제5조)하고 있으며, 심의사항으로는 조경완화, 조경기준적용, 미술장식품 등으로 규정(서울시 자치구 건축조례 제5조)하고 있다.

그리고 建築技術審議委員會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조경설계도서의 종류 규격 및 내용에는 기본설계의 경우 조경계획도에 축척, 식수평면계획, 수종, 조경면적 산출내용과 조경시설물(환경조각 상징탑, 벤치, 파고라, 분수, 휴게소, 휴지통 등), 유희시설, 체육시설 등의 위치를 표시하도록 하였고, 실시설계의 경우 조경상세도에 수목, 잔디, 조경시설물, 유희시설, 체육시설 등의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 일체를 표시하며, 조경토목계획도에 조경단지 구성에 필요한 사항일체를 표시하며, 그리고 조경토목상세도에 토목구조물 등의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 일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V. 綜合 및 問題點導出

1. 綜合

법·제도상 조경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표 19>와 같다.

都市計劃에서의 조경관련 사항은 도시계획법과 동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건축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조경에 대한 규제방법은 都市計劃區域에는 허가, 준공검사, 이행보증금의 직접 사용, 원상회복이라는 규제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地域·地區·區域에서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은 조치와 심의, 상업지역은 심의, 풍치지구는 조치, 도시시설지구에는 승인과 심의, 특장지구정비지구는 승인, 시가화조정구역은 허가와 조치라는

규제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都市計劃施設중 도서관·공동묘지·장례식장은 조치, 학교건축물·시장·주차장은 심의, 도시공원들은 조치, 경관녹지는 조치라는 규제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團地計劃에서의 조경관련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과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관리규칙,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건축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조경에 대한 규제방법은 住宅團地는 승인이라는 규제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共同住宅은 설계, 감리, 조치, 허가, (하자)보수, 사용검사, 신고라는 규제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生活便益施設은 조치라는 규제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垆地計劃에서의 조경관련 사항은 건축법과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서울시 건축조례, 대구직할시 건축조례,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건축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다. 조경에 대한 규제방법은 垆地는 조치, 벌금, 사용검사, 심의라는 규제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建築物은 허가, 설계, 감리, 심의라는 규제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동물관련시설 중 축사는 조치라는 규제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公開空地는 심의, 屋上造景은 조치와 심의라는 규제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美術裝飾品은 권장, 심의, 조치라는 규제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國土計劃에서의 조경관련 사항은 자연공원법 시행령과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다. 조경에 대한 규제방법은 자연공원은 허가라는 규제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승인이라는 규제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委員會에 대한 조경관련 사항은 건축법, 서울시 건축조례, 대구시 건축조례, 서울시 자치구 건축조례,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조경에 대한 규제방법은 建築委員會는 조경분야의 위원에 대한 임명과 심의라는 규제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建築技術審議委員會에는 심의라는 규제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表 19> 法·制度上 關聯 規制內容과 規制方法

		計劃設計					施工		維持管理			罰則		備 考	
		審議	承認	勸獎	措置	許可	設計	監理	檢査	報告	申告	補修	罰金		回復
都市計劃	都市計劃區域					0		0			0		0		
	地域 地區 區域	綠地地域	0			0									
		商業地域	0												
		風致地區				0									
		都市設計地區	0	0											
		特定街區整備地區		0											
	都市計劃施設	市街化調整區域				0	0								
		圖書館				0									
		共同墓地				0									
		葬禮式場				0									
		學校建築物	0												
		市場	0												
		停車場	0												
都市公園				0											
景觀綠地				0											
園地計劃	住宅園地		0												
	共同住宅				0	0	0	0	0	0	0	0	0		
	福利施設				0										
垆地計劃	垆地	0			0			0					0		
	建築物	一般建築物				0	0	0							
		農魚業施設	0												
		工場	0												
		動物關聯施設				0									
	公開空地	0			0										
屋上造景	0			0											
美術裝飾品	0		0												
國土計劃	自然公園					0									
	特定地域		0												
委員會	建築委員會	0													
	建設技術														
	審議委員會	0													

2. 問題點導出

(1) 關聯 法·制度의 改定에 따른 問題點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 상위 법률(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경관련 규정들이 완화·삭제되거나 혹은 하위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일임됨으로써 법의 성격이 약하게 되거나 혹은 조경관련 규정의 이행과정에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計劃·設計와 關聯된 問題點

첫째, 조경시설에 대한 설계자격의 조건과 대상이 조경기사(1급)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설계의 대상을 연면적 5,000m² 이상 건축물과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다.

둘째, 조경의무대상이 되는 모든 건축물(면적 200m² 이상인 대지)에 대한 조경설계에서 조경기사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

셋째, 조경설계에 대한 심의내용이 대지 안

의 조경완화, 조경기준, 그리고 미술장식품만으로 개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질적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심의규정이 없다.

(3) 施工과 關聯된 問題點

첫째, 조경시설에 대한 감리자격의 조건과 대상이 조경기사(1급)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설계의 대상을 연면적 5,000m² 이상 건축물과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다.

둘째, 조경의무대상이 되는 모든 건축물(면적 200m² 이상인 대지)에 대한 조경시공에서 조경기사의 감리에 대한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

셋째, 조경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사용검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

(4) 維持·管理와 關聯된 問題點

첫째, 완공된 조경관련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조경시설물의 종류와 면적, 개소 등에 대해 변경 혹은 철거를 하는데 있어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의 비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다.

둘째, 완공된 조경관련 시설물의 유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경시설의 훼손, 변경 혹은 철거에 대한 신고의무규정이 없다.

셋째, 조경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조경기사의 의무공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VI. 結論 및 提案

공공성이 큰 조경의 경우 법규상 규정이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지 못할 경우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의 창출은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경에 대한 법규의 규정을 상위 법률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야 하며, 좀더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측면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법·제도적 측면에서 추가되어야 한다.

첫째, 법률의 개정에서 조경관련 규정들은 법적 구속력이 강한 상위 법률(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자세하게 규정되고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계획·설계에서 연면적 5,000m² 이상의 건축물과 세대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한 조경설계는 기존의 규정대로 조경기사 1급이 설계하도록 하지만, 조경의무 대상건축물(면적 200m² 이상인 대지)과 조경기사 1급이 설계하지 않는 범위에 속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기사 2급이 설계를 담당하도록 의무화하며, 조경설계에 대한 설계심의회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치 혹은 허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허가취소, 자격의 일시정지 혹은 자격취소, 그리고 벌금부과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시공에서 연면적 5,000m² 이상의 건축물과 세대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한 조경감리는 기존의 규정대로 조경기사 1급이 감리하도록 하지만, 조경의무 대상건축물(면적 200m² 이상인 대지)과 조경기사 1급이 감리하지 않는 범위에 속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기사 2급이 감리를 담당하도록 의무화하며, 조경공사의 완료에 대한 사용검사에 대한 규정을 둔다. 그리고 시공 혹은 감리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면허취소, 기사자격의 일시정지 혹은 자격취소, 그리고 벌금부과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유지·관리에서 조경관련 도면 및 서류의 비치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며, 조경시설물의 변경에 대해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며,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인(조경기술자)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리고 유지·관리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자격의 일시정지 혹은 자격취소, 벌금부과, 원상회복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1) 권오준(1993) "최근 조경관련 법·제도개정에 대한 조경계의 반향", 「환경과 조경」, 통권62호:50-53.
- 2) 金承煥(1993) "일본의 조경관련행정 및 제도", 「환경과 조경」, 통권62호:54-58.
- 3) 김은성(1993) "녹지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법규 및 고려사항", 「환경과 조경」, 통권61호:156-160.
- 4) 金平卓(1991) 「건축용어대사전」, 서울:기문당.
- 5) 신주택미디어(1994) 「주택사업실무편람 법령II」, 서울:동아출판사.
- 6) 이동철(1993)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건의", 「환경과 조경」, 통권62호:59-62.
- 7) 田耕培·崔璨煥(1995) 「건축법규해설」, 서울:세진사.
- 8) 조상원(1992) 「法典」, 서울:현암사.
- 9) 韓國法制研究院(1995)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서울:법제처.
- 10) 玄岩社(1994) 「法典」, 서울:현암사.